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30100321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3. 04. 2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http://yesin.kr  
 yheasin2015@naver.com



## 정 보 공 개 서

『예신』 가맹본부인 (주)예신건강가꾸기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예신건강가꾸기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1108호(우동, 센텀그린타워)

[대표 전화번호] 1522-2153

[대표 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1522-2153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1] 인근 가맹점 현황

[별첨2]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별첨3]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4] 가맹본부 재무상황 근거자료

[별첨5] 초도물품 목록

[별첨6]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예신 건강가꾸기	예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1108호 (우동, 센텀그린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4.24	2014.06.05	한정훈	1522-2153	-
	법인등록번호	110111-5401958	사업자등록번호	264-81-35795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한정훈	예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1108호 (우동, 센텀그린타워)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한정훈	1522-2153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예신	예신	2014.4.23	울산시 남구 달동 121-5 4F	김복희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예신”라 함)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예신	
상호	예신 00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1-0282912호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309755호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897876호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명칭은 현재 브랜드를 나타내며, 상호는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할 내용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부여되는 가맹점포명입니다.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557,313	1,752,781	-1,195,468	789,568	343,022	343,022
2023년	502,288	1,889,123	-1,386,835	81,500	-191,366	-191,366
2024년	410,597	1,686,775	-1,276,177	130,000	110,657	110,657

그 근거자료는 [별첨4]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한정훈	대표이사	2014.4.24 ~ 현재	대표 이사	예신 가맹사업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0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예신]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일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서비스표	출원일 2013.3.12 등록일 2014.3.18	출원번호 제41-2013-0008933호 등록번호 제41-0282912호	주식회사 예신건강가꾸기	2024.3.18.
	상표 서비스표	출원일2017.07.03. 등록일2017.12.04	출원번호 제40-2017-0082142호 등록번호 제40-1309755호	주식회사 예신건강가꾸기	2027.12.04.
	상표 서비스표	출원일2021.01.14. 등록일2022.08.09.	출원번호 제40-2021-0008796호 등록번호 제40-1897876호	주식회사 예신건강가꾸기	2032.08.0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의 김복희로부터 상표 및 특허권에 관련된 모든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예신] 가맹사업 현황

1. [예신]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1년 11월 2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4년 6월 21일)

### 2. [예신]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 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예신	예신	김복희	2010.7.30 ~ 2014.4.23	울산시 남구 달동 121-5 4F
(주)예신 건강가꾸기	예신	한정훈	2014.4.24 ~ 2021.03.2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5, 15층 (서초동, 삼성화재 서초사옥)
(주)예신 건강가꾸기	예신	한정훈	2021.03.21. ~2022.09.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720호(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주)예신 건강가꾸기	예신	한정훈	2022.09.13.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1108호(우동, 센텀그린타워)

### 3. [예신] 업종

영업표지	업종	
예신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미용	피부 및 체형 관리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예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29	29	-	29	29	-	26	26	-
서울	6	6	-	5	5	-	5	5	-
부산	1	1	-	2	2	-	3	3	-
대구	1	1	-	2	2	-	2	2	-
인천	2	2	-	2	2	-	2	2	-
광주	1	1	-	1	1	-	-	-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2	2	-	2	2	-	1	1	-

세종	1	1	-	-	-	-	-	-	-
경기	5	5	-	7	7	-	6	6	-
강원	-	-	-	-	-	-	-	-	-
충북	1	1	-	-	-	-	-	-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1	1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4	4	-	4	4	-	4	4	-
제주	1	1	-	1	1	-	-	-	-

5. 최근 3년간 [예신]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27	6	-	4	3	29
2023년	29	10	4	6	4	29
2024년	29	1	-	4	1	26

6. [예신]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예신]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26	해당없음	-	-	-	-	-	산정불가
서울	5	해당없음		-		-		산정불가
대구	2	해당없음		-		-		5곳미만

부산	3	해당없음		-		-		5곳미만
인천	2	해당없음		-		-		5곳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5곳미만
대전	1	해당없음		-		-		5곳미만
울산	1	해당없음		-		-		5곳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5곳미만
경기	6	해당없음		-		-		산정불가
강원	-	해당없음		-		-		
충북	-	해당없음		-		-		
충남	1	해당없음		-		-		5곳미만
전북	-	해당없음		-		-		5곳미만
전남	-	해당없음		-		-		
경북	-	해당없음		-		-		
경남	4	해당없음		-		-		5곳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5곳미만

당사는 2016년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을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나, 물품 공급품목 등의 변동으로 정확한 매출액 추정이 어려워졌습니다. 향후 이 점을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파악을 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8. [예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예신]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26개	1349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 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2024년에 [예신]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1]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사	가맹점	
합계		비공개	248	비공개	비공개	
광고	소계		248	비공개	비공개	
	TV					
	온라인 광고					
	기타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울산 중앙지점	울산시 남구 달동 1359-8	052-271-2065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작성된 예치신청서를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중소기업은행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중소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 후 www.ibk.c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한 후 '부가서비스' 클릭후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에 접속하여 가맹금 예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중소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예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0				
가맹비	11,000	가맹 계약과 동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일회성·소멸성 선금금으로 반환 안됨	- 입회비 및 가맹점운영권 및 영업표지 사용권
개점 전 교육 및 지원비	22,000			교육 및 지원 개시 이후에는 반환 안됨	- 개점 전 관리 / 서비스 / 운영 교육 및 개점지원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0	가맹 계약과 동시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53,000	53,000
가맹비	11,000	11,000
개정 전 교육 및 지원비	22,000	22,000
보증금	20,000 (부가세 없음)	20,000 (부가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47,775	2,956			
인테리어 (점포내장 공사)	인테리어 시공업체 (가맹점 자율)	165㎡(50평) 기준 135,000 (철거, 전기승압, 외장, 어닝, 화장실공사, 소방완비, 냉난방 시설 등 별도)	2,700	협의	공사 전 계약 취소	
필수 설비 (체온방)	체온방 -가맹본부	10,000 [체온방 4평 기준]	250	협의	설치 및 상품 공급전 계약취소	

외부 간판	협력업체	2,123 [전면간판(1.2*8.0) 돌출간판(0.8*3.0) 내부선팅(5.0*5.0)]	-	협의	제작 전 계약취소
집기 및 비품	가맹본부	4,362 [인바디, 타월, 유니폼]	-	협의	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상품	가맹본부	13,690 [돔+메트세트, 오일, 화장품류]	-	협의	상품 미공급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은 지역별/현장 상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인테리어 설비를 시공할 경우 당사 표준 매장의 설계도 제공 및 감리 등에 대한 대가로 3.3m<sup>2</sup> 당 **금이십이만원정(₩220,000원/부가세포함)**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도출 → 가맹점 입점 위치 확정	당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수수료	가맹본부	금 18,000,000원(1년) (부가세 포함)	최초 또는 계속 가맹시	미반환	수수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직영점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 균분 부담, 또는 상호 협의하여 비용부담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광고 한달 전까지	광고 미집행	광고 집행	전체 가맹점 균등하여 납부(단, 지역별 차등하여 납부가 가능)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기획 및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제작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 부담)	판촉 한달전까지	판촉 미집행	판촉 집행	
교육비	가맹본부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교육 미실시	교육실시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가맹본부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협의	미반환	변경설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제조물 책임보험 화재보험	협력업체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33P 참조
POS 사용료	미지정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금 결제 연체 시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의 재고관리, 회계처리등 영업상황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30일]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가맹계약 유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을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관계를 탈퇴할

수 있으며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는 영업표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변경된 종전의 영업표지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종전 영업표지가 부착된 물품과 기기 및 점포설비 등은 당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영업표지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예신]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희망시, 그 신청이 [예신]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가맹비(영업표지 등에 대한 사용권, 가맹점 모집을 위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양수인의 매장 오픈 지원을 위한 비용)와 광고비, 교육비, 보증금을 납부하고 양수가 가능합니다.(단, 양도인의 잔존하는 계약기간 내에 한하여 유효함).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신규 가맹 계약을 요구할 경우, 양수인은 [예신]에 가맹비 전액과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종료된 후 귀하의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되며, 매장 내의 집기 비품 등 [예신]의

로고가 사용된 모든 내용물의 처분에 관하여서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일까지 상호·간판 등 당사의 로고가 부착된 각종 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 또는 방치할 경우, 귀하는 보증금 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종료 **[15일]** 전까지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전산장치 DB 등 영업관련 자산 및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 당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각종 유·무형의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 및 당사의 거래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당사의 영업 비밀, 사업내용, 고객 정보 등 당사의 사업에 피해가 가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예신]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예신]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예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예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요색요법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 및 서비스를 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구두+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가맹사업 법에 의한 가맹계약해지통지	
사각턱 V라인			
광대뼈 축소			
안면 비대칭			
골반 비대칭			
전신 관리			
상반신 관리			
하체 관리			
OX 다리 관리			
여드름 관리			
미백 관리			
리프팅 관리			
특수 리쥬 맥스 산소테라피			
특수 4D 안면 동안 만들기			
산모 산전 관리			
산모 (가슴+하체+특수아로마)			
산모 수유관리 + 회복관리			

소아관리			
청소년 관리			
수족냉증 관리			
생리불순&생리통 관리			
편두통 관리			
두피관리			
이원관리			
체온업 순환관리			
비두관리			
아이레스 S라인 관리			
탈모관리			
안젤리카			
아이레스			

가맹점 상황(점포의 위치, 점포의 크기, 고객성향 등)에 따라 가맹본부의 서비스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며, 귀하가 임의로 용역을 추가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소비자 이외의 제3자 또는 다른 가맹점	본 정보공개서 V-4-1)에서 지정된 가맹점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 이외의 제3자 또는 다른 가맹점에게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경고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1회 기준)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연관리	40만원	변동시 공지	
금관리	40만원	"	
비뚜(전신)	30만원	"	
비뚜(앞 or 뒤)	15만원	"	
아이레스관리(전신)	30만원	"	
아이레스관리(상)	15만원	"	
아이레스관리(하)	15만원	"	
E-Tub관리	15만원	"	
베이스파(궁)관리	15만원	"	
버블스파관리	15만원	"	
림프균형관리	15만원	"	
부분비뚜관리	8만원	"	
브레인관리	8만원	"	
림프관리	8만원	"	
리커버관리	8만원	"	
시스루관리	8만원	"	
셀다운(부분)	8만원	"	
밴디지(부분)	8만원	"	
간반요쿠	5만원	"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피부관리, 에스테틱 전문점	예신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일반 주거지역 기준 가맹점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2km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얻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예신]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예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예신]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단, 본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가맹계약상의 가맹수수료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계약서 제9조 제2항
○ “을”이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업방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갑”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갑”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상품대금, 설비대금 기타 금전채무의 납입을 불이행, 거부, 지체한 경우	계약서 제40조 제1항
○ “을”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갑”이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서면승인 없이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24조 제4항과 제27조의 자점매입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을”이 가맹계약서 제42조 제5항의 경업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계약서 제40조 제2항
○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을”이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본사 (1522-2153)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영업표지 등에 대한 사용권, 가맹점 모집을 위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양수인의 매장 오픈 지원을 위한 비용), 광고비, 교육비 및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과 가맹본부의 상속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와 보증금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예신]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용, 에스테틱 서비스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본사 (1522-2153)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예신]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21:00	월 24일 이상 영업	문의: 본사 (1522-21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개별 점포별로 상이	직접 근무	배우자, 친·인척 등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수시	가맹관리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가맹관리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관리팀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예신] 브랜드 이미지 재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행사에 따라 비용은 실비를 원칙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 및 브랜드광고	직영점을 포함한 가맹점 사업자 균분 부담, 또는 상호 협의하여 비용부담 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TV, 라디오, 신문, 협찬등),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		
판촉 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10%	증정상품 90%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가맹점별 분담금 확정·납부 → 행사 시행	”
	팸플릿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10%	판촉물 제작비용 9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서비스로 인한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가능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예치된 보증금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별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최초가맹금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최초가맹금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최초가맹금의 50%

단,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위약별과 별도로 투입된 점포 공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는 이를 알아낸 말부터 직전 3개월에 걸쳐 발생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 매출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배상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와 행정상의 책임을 진다.

3) 당사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 및 가맹점 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배상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일 × 금삼만원정(₩30,000)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 한도는 [금이천만원정(₩2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는 위약금으로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 판매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 매출의 배액을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5)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 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금액
합계		60일 내외	164,175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5~51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8~36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D-35	-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35	16,4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3~31	147,775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일정 확인	D-30~28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7~3 (25일)	-
교육실시	- 예신 프로그램 교육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	D-15~1 (3일 이상)	가맹금에 포함
설비 및 집기	- 주방 및 홀 설비 -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	D-10~2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은 평균적(165㎡ 50평)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 또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 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lt;분할지급 시 절차&gt;</li> <li>○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공	가맹점사업자 부담	문의: 본사 (1644-733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공	가맹점사업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예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예신 프로그램, 매장 운영, 서비스 등	현장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필수 교육
정기 교육	회사 소개, 예신 프로그램, 매장 운영, 서비스 등	현장교육	수시	매월 교육
특별 교육	신규 프로그램 교육, 고객 서비스 등	현장교육	수시	매년 비정기 교육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예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3일	최초 가맹금에 합산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특별 교육 (신규 프로그램, 고객서비스 등)	1일 이상	가맹점 사업자 부담	실비 책정 후 가맹점사업자 통지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교육인원이 늘어날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의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 및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 가맹계약서 제39조에 근거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지역	직영점명	주소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 중인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할 예정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1670-0007)**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인근 가맹점 현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No.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_\_\_\_\_.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주식회사 예신건강가꾸기 (인)

[별첨2]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

<b>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b>			
<b>성 명</b>	(인) 또는 서명	<b>주민번호</b>	
<b>주 소</b>		<b>전화번호</b>	
<b>제공일시</b>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b>제공받은 장소</b>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_\_\_\_\_.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주식회사 예신건강가꾸기 (인)

**정보공개서 수령자** : \_\_\_\_\_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점사업자>

<b>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b>			
<b>성 명</b>	(인) 또는 서명	<b>주민번호</b>	
<b>주 소</b>		<b>전화번호</b>	
<b>제공일시</b>	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	<b>제공받은 장소</b>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_\_\_\_\_.

(정보공개서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주식회사 예신건강가꾸기 (인)

**정보공개서 수령자** : \_\_\_\_\_ (인) 또는 서명

###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4] 가맹본부 재무상황 근거자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5] 초도물품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6]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